

(參 照)

#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 안	95-31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5. 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  
(지 적 과)

## 1. 제안이유

- 헌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
- 상위법에 제정된 법조문 취지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.

2. 근거법령

- 헌법 제49조
-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

3. 주요골자

- 조례 조문 일부 개정  
“결정권을 가진다”를 “부결된 것으로 본다”로 개정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##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결정권을 가진다”를 “부결된 것으로 본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②	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<u>결정권을 가진다.</u>	제6조②	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<u>부결된 것으로 본다.</u>	